3. 예산 이용·전용·이체사용

지방재정법 제47조, 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 규정에 의하여 2013회계연도 기간중에 예산을 이용・전용・이체사용한 것은

1. 예산이용(1건) 136,644,000원
2. 예산전용(27건) 1,469,851,000원
3. 예산이체(250건) 81,675,165,685원이며

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.